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94
----------	-------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김은희·황보승희·박덕흠
송석준·지성호·유경준
김미애·조수진·이인선
김근태·윤영석·김예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

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으로는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하여 게시 또는 표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다)임을 알면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 ⑦ (현행 과 같음) <u>⑧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 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동·청 소년성착취물(해당 아동·청소 년성착취물만으로는 촬영대상 아동·청소년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 취물과 관련하여 게시 또는 표 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을 포함한다)임을 알면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 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한다.</u>